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	1

(2012. 11.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명 금 길]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11월 16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2년 11월 22일

나. 의안번호 : 12-104

4. 관련근거

가. 「민법」 제32조 및 제59조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마포문화재단 운영관련 현재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자로 되어 있어 재단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사장(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이 부인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이사장을 외부 인사로 변경함으로써 마포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1) 안 제7조에서는 재단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비상임 이사장으로 변경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재단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장에서 상임이사로 변경하고, 선임직 이사 임명권을 이사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함.

※ 주요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이사장	구청장	구청장이 임명
재단 대표	이사장	상임이사(대표)
선임직 이사 임명	이사장	구청장

(2)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

<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사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할 경우 이사장인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이 부인하는 자기 모순 또는 독선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단업무에 전념하기 곤란하므로 이사장을 문화예술계의 덕망 있는 외부인사로 변경함으로써 문화재단 운영의 자율권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적인 양태를 일신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재를 갖추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마포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